

## 『문물』 발간 및 투고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의 학술지인 『문물』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

『문물』의 투고,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 제3조(발간 횟수)

『문물』은 매년 6월 30일 총 1회 발간한다.

### 제4조(게재 논문의 내용과 종류)

- 1) 고고학, 미술사, 박물관학, 한국사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 2) 게재 논문의 종류에는 1)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관련분야 번역문 등이 포함된다.
- 3) 기타 한국문물연구원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다.

### 제5조(논문 투고)

- 1) 투고 자격은 고고학, 미술사, 박물관학, 한국사 및 이에 관련된 전문 연구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문물』 논문투고 신청서[별첨자료 1] 및 논문을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한국문물연구원 『문물』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 3) 『문물』의 간행 2개월 이전에 투고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간행일 1개월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해당 학술지에 게재한다.
- 4) 공동 필자일 경우, 제1 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 제6조(논문 투고 세부사항)

- 1) 원고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e-mail 또는 우편물로 제출)
- 2)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로 첨부하는 서식을 참조한다.
- 3)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심사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4)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간행된 『문물』 3부와 별쇄 20부를 필자에게 증정한다.

5) 그 외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하신번영로 401(하단동) 청운빌딩 한국문물연구원  
『문물』편집위원회

Tel: 051-206-4201~2 Fax: 051-206-4209

Homepage: [www.kaari.or.kr](http://www.kaari.or.kr)

####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 1) 『문물』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2차 심사는 별도로 위촉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 제8조(논문 심사)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심사결과 통보)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可否를 통보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간행되는 『문물』 제1호 부터 적용한다.

[별첨 자료1]

## 『문물』 논문투고 신청서

투고자	한글		영문	
소속			직위	
진공			최종학력	
연락처	h.p:	유선:		
주소				
논문제목				
투고일			『문물』 게재호수	
논문형태	연구논문( ), 자료소개( ), 번역문( )			
기타사항	1. 한국문물연구원 학술연구비 수혜자 ( ) 2. 그 외			
<p>1. 본인은 한국문물연구원의 연구 학술지 『문물』에 논문을 투고합니다.</p> <p>2. 『문물』의 연구윤리규정 및 그 외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p> <p>『문물』편집위원회 귀하</p>				

\*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문물』 논문투고 신청서 및 논문을 한국문물연구원 『문물』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물』 논문심사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의 학술지인『문물』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 1) 『문물』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 연구업적이 많은 전문 연구자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제3조 편집위원회 기능

- 1)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2)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3)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4)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 5) 기타 학술지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연구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이 논문의 게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위원이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고 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5조 심사 절차 및 기준

- 1)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심사대상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모집기한까지 본원에 제출된 원고에 한한다.

- 3)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번역 등은 일부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에서의 1차 심사과정은 연구 주제,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를, 2차 심사는 해당분야 심사위원이 연구방법, 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 논리전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판정하여 심사결과[별첨자료 1]를 제출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제6조 심사결과 판정

-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2)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인 「투고 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및 「심사의견서 및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1) B등급 이상인 경우: 게재
  - (2) C나 D등급이 하나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하여 B등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 (3) C나 D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불가

#### 제7조 심사결과 통보

-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2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거부 사유서」[별첨자료 2]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 소유권

- 1) 『문물』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한국문물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된다.

#### 제9조 기타사항

-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간행되는 『문물』 제1호 부터 적용한다.



[별첨 자료1]

(뒤)

### 심사의견서 및 수정사항

1. 선행 연구의 소개 · 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2. 연구 방법 · 내용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수정사항)
3. 자료 활용의 적절성(새로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자료의 새로운 해석)
4. 기타 수정 사항
5.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별첨 자료2]

### 수정거부 사유서

심사논문제목				
투고자	성명		연락처	
	소속		제출일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문물』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의 『문물』 학술연구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진정한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4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기타)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간행되는 『문물』 제1호 부터 적용한다.